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상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37 발의연월일: 2021. 3. 8.

발 의 자: 박상혁 · 문진석 · 김정호

임오경 · 이동주 · 어기구

김윤덕 • 이정문 • 민형배

윤후덕ㆍ허 영ㆍ김주영

진성준 · 최인호 · 박 정
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노후 저층 주거지 개선을 위해 현행법이 시행된 지 3년이 경과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인지도가 확산되고 있음.

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,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생략된 절차규정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준용규정이 소규모 사업특성에 맞지 않거나 누락되어 사업 추진에 혼선이 있어 현행법의 절차상미비사항 보완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있음.

따라서 창립총회 개최, 조합해산 절차, 사업시행구역 내 행위제한 등을 신설하며, 임대주택 인수대상 범위, 자료의 공개 및 중요한 회의 의 범위 등 현행규정을 보완하고 자구, 오기 및 인용조항을 수정하려 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조합설립 동의요건 달성 후 창립총회를 개최토록 규정함(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).
- 나. 조합의 해산 신고 절차를 신설하고, 장기간 사업이 지연·중단되거나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 요청하는 경우 직권으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23조의2).
- 다.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 등 행위제한을 규정함(안 제23조의3).
- 라.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 뿐만 아니라,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24조제2 항).
- 마.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6조제1항).
- 바.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 택에 대해서만 공공에서 인수토록 규정함(안 제49조제2항 및 제3 항).
- 사. 관련 자료의 공개에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포함하고 중요한 회의의 범위 및 서류인계 의무를 규정함(안 제5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).

- 아.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를 준용토록 함(안 제56조제1항).
- 자. 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(안 제61조).
- 차. 관련 서류의 인계 태만 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(안 제6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8조제1항제1호 중 "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"을 "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"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"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"을 "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"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정하는"을 "정하여 고시하는"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받아"를 "받은 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회(이하 "창립총회"라 한다)를 개최하고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"을 "그 외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이 소재하는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받아"를 "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"로 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조합의 해산) ① 조합은 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조합 총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여야하다.

② 시장·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

조합의 해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- 1.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2 6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
- 2.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때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 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- 3.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(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)
- 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6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.
 - 1.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·고시 가 있은 날
 - 2.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고한 날
 - 3.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

- 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 ·군수등은 「행정대집행법」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
-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조합원은"을 "조합원(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조합설립인가"를 "조합설립인가(조합설립인가 전에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소규모재건축사업"을 "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4. 1세대(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) 1주택자로 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
-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이 경우 시장·군수등이 검인(檢印)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.
-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종료일"을 "종료일의 다음 날"로 한다.
- 제4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, 위치, 용도, 이용 상황 및 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- ⑤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은 제56조제2항에 따른다. 제48조제3항 중 "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"을 "주차장"으로 한다. 제49조제2항 중 "전체 세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"을 "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"으로 하고, 같은 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"을 "제2

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각 호의 어느 하나의"를 "각 호에 해당하는"으로 한다.

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"으로 하며.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

를 각각 삭제하고. 같은 조 제6항 중 "적용한다"를 "적용할 수 있다"로

한다.

제54조제5항 중 "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"를 "토지등소유자의 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, 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,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열람·복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 제54조제6항 중 "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)"를 "사업시행자"로, "회의"를 "회의(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·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신설한다.

⑦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 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·군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제56조제1항 전단 중 "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"을 "사업시행구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를,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"으로, "청산금의 가격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9조 및 제90조를"을 "청산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90조를"로 한다.

제6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"제54조제6항"을 "제54조제5항 후단"으로 한다.

1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제6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가로주택정비사업・소규모	제18조(가로주택정비사업・소규모
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)	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지정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1. 천재지변, 「재난 및 안전관리	1
기본법」 제27조 또는 <u>「시설물</u>	「시설
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	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
14조에 따른 사용제한・사용금	<u>특별법」</u>
지,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	
급하게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	
는 경우	
2. ~ 6. (생 략)	2. ~ 6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시공자의 선정 등) ① (생	제20조(시공자 선정 등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	2
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	
은 후 조합 총회에서 <u>국토교통부</u>	국토교통부
<u>장관이 정하는</u> 경쟁입찰 또는 수	<u>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</u>
의계약(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	
된 경우로 한정한다)의 방법으로	
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	
자로 선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	
규모주택정비사업은 조합 총회에	

혅 행 개 정 아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정할 수 있다. ③ ~ ⑧ (생 략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 제21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 정 등) ① (생 략) 정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----<u>정하여 고</u>시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 찰 또는 수의계약(2회 이상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) 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가로주 제23조(조합설립인가 등) ① ----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 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 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 받은 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여 시장 ·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법」 제32조제3항에 따른 창립총 한다.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공 회(이하 "창립총회"라 한다)를 개 동주택은 각 동(복리시설의 경우 최하고----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별 구분소유 자의 과반수 동의(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

현 행	개 정 안
우는 제외한다)를, <u>공동주택 외의</u>	
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	그 외의 토지
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	또는 건축물은 해당 토지 또는 건
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.	<u>축물이 소재하는</u>
	<u>.</u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	②
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	
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(복리	
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	
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)	
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(공	
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	
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)와 주	
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	
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	
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<u>받아</u>	발은
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	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
시장・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	
다.	
	.
③ ~ ⑦ (생 략)	③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조합의 해산) ① 조합은

현 행	개 정 안
	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총회의
	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해산신고를 하여
	야 한다.
	② 시장・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
	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
	으로 조합의 해산에 필요한 조치
	를 취할 수 있다.
	1.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
	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
	제26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
	의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
	<u>우</u>
	2.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
	가 있은 때부터 1년이 되는 날까
	지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
	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	3. 조합이 설립된 사업시행구역에
	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
	의 해산을 요청하는 경우(사업시
	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
	경우로 한정한다)
	③ 제2항에 따른 조합의 해산 절
	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	통령령으로 정한다.

현 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23조의3(행위제한 등) ① 소규모
	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
	서 다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「도
	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
	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	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・군
	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
	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
	또한 같다. 다만, 사업시행자가 다
	음 각 호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
	는 날까지 제26조에 따른 지방건
	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지 아니
	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	<u>다.</u>
	1.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공공
	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・
	고시가 있은 날
	2.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를 신
	3.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
	받은 날
	② 시장·군수등은 제1항을 위반
	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
	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
	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
	I I

현 행	개 정 안
	시장・군수등은 「행정대집행
	법」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
제24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<u>조합원</u>	제24조(조합원의 자격 등) ① <u>조합원</u>
은 토지등소유자(소규모재건축사	(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
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	는 위탁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
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)로 하되,	<u>서 같다)은</u>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
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	
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.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	3. 조합설립인가(조합설립인가 전
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	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
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	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
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	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
	<u>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
② 「주택법」 제63조제1항에 따	2
른 투기과열지구(이하 "투기과열	
지구"라 한다)로 지정된 지역에서	

혅 행 개 정 아 대한 동의(동의한 사항의 철회를 포함한다)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(指章) 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, 주민 등록증,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 여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-. 이 경우 시장·군수 등이 검인(檢印)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, 검인을 받지 아 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 생하지 아니한다. 1. ~ 5. (생 략)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36조(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36조(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) ① 가로주택정비 등에 대한 조치) ① -----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 업시행자는 제29조에 따라 사업시 행계획이 인가 · 고시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,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협의를 ---------종료일의 다음 날 시작할 수 있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 략)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청산금 등) ①・② (생 략)	제41조(청산금 등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
	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
	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
	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
	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
	또는 건축물의 규모, 위치, 용도,
	이용 상황 및 정비사업비 등을 참
	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
	은 제56조제2항에 따른다.
제48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	제48조(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
특례) ①·② (생 략)	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시장・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	③
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	
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	
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범위에서 「주차장법」 제2조제1	
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	<u>주차장</u>
<u>차장</u> 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(이하	
"주차장 사용권"이라 한다)를 확	
보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범위	
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	

현 행	개 정 안
수 있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9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)	제49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사업시행자가 전체 세대수의 1	② <u>전체 세대수 또</u>
0퍼센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	는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공
설하고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	<u> 공임대주택</u>
화받은 경우 그 임대주택을 국토	
교통부장관, 시 • 도지사, 시장 • 군	
수등,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주택	
도시기금이 총지분의 100분의 50	
을 초과하여 출자한 「부동산투자	
회사법」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	
(이하 이 조에서 "인수자"라 한다)	
에 공급하여야 한다.	
③ 사업시행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</u>	③제2항에 따라 공공임
<u>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경우 건축설	<u>대주택을 공급하는</u>
계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세대면	
적, 세대수 등 임대주택에 관한 사	
항을 인수자와 협의한 후 이를 사	
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.	
1.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	<u><삭 제></u>
2.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	<u><삭 제></u>
하는 경우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⑥ 시장·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	6
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	
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	
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	
관하여 「주택법」 제35조에도 불	
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	
을 <u>적용한다</u> .	<u>적용할 수 있다</u> .
제50조(정비지원기구) ① 국토교통	제50조(정비지원기구) ①
부장관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	
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	
다음 <u>각 호의 어느 하나의</u> 기관을	<u>각 호에 해당하는</u>
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.	
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54조(감독 등) ① ~ ④ (생 략)	제54조(감독 등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⑤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	⑤ <u>토지등소유자의</u>
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	경우 주민합의체 대표자, 조합의
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	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을
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)는 소규	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
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	
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	
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,	
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	

현 행	개 정 안
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	
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	
<후단 신설>	
	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
	합원,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관
	런 자료를 열람·복사 요청한 경
	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
	<u>한다</u> .
⑥ 사업시행자(조합의 경우 청산	⑥ <u>사업시행자</u>
인을 포함한 조합임원, 토지등소	
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사업의	
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) 또는 정	
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5항에 따	
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	회의(조합원 또는 토지등
중요한 <u>회의</u> 가 있을 때에는 속기	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
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	권리・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
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.	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
	<u>의를 말한다)</u>
<u><신 설></u>	⑦ 시장·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
	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
	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

현 행

개 정 안

⑦ (생략)

제56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의 준용) 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」 제27조 및 제36조 를,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를, 조합 의 법인격 · 정관 · 임원 등에 관하 여는 같은 법 제38조 및 제40조부 터 제46조까지를, 주민대표회의 및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7조 및 제48 조를,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기 준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1조 를, 용적률 상한 등에 관하여는 같 은 법 제54조를, 시장·군수등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 획서 작성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및 제58조를, 소유자 확인 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71조를, 한 때에는 시·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시장·군 수등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⑧ (현행 제7항과 같음)

<u></u>
제56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
의 준용) ① <u>사업시행구역의 행위</u>
제한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 및 주
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를, 토지등
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하여는
같은 법

현 행	개 정 안
시공보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	
2조를,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의 절	
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	
제83조 및 제85조를, 소유권을 이	
전한 경우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	
한 권리 확정 등에 관하여는 같은	
법 제87조를, <u>청산금의 가격평가</u>	
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같은	<u>청산금의 징수방법</u>
법 제89조 및 제90조를, 부과금 및	등에 관하여는 제90조를
연체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	
는 같은 법 제93조를, 정비기반시	
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및 귀속 등	
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4조 및 제	
97조를, 국유・공유 재산 처분 등	
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8조를, 정	
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하여는	
같은 법 제102조부터 제110조까지	
를,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독	
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1조부	
터 제113조까지, 제124조 및 제125	
조를,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,	
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등에 관	
하여는 같은 법 제115조, 제120조	
부터 제122조까지를 준용한다. 이	
경우 "재개발사업"은 "자율주택정	

현행	개 정 안
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"으	
로, "재건축사업"은 "소규모재건	
축사업"으로 본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1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제61조(벌칙)
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	
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	
처한다.	
1. (생 략)	<u>1</u> 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2.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허
	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
	거나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
	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
	행위를 한 자
<u>2</u> . ~ <u>7</u> . (생 략)	<u>3</u> . ~ <u>8</u> . (현행 제2호부터 제7호까
	지와 같음)
<u>8.</u> <u>제54조제6항</u> 에 따른 서류 및 관	9. 제54조제5항 후단
런 자료의 열람 · 복사 요청에 허	
위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	
·복사해 준 조합임원(토지등소	
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그	
대표자를 말한다)	
제6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6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②
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	

현 행	개 정 안
태료를 부과한다.	··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제54조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
	의 인계를 태만히 한 자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